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197호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255호(2005.3.3.)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호(2006.6.29.) 지구 변경(확장) 지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호(2008.12.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호(201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호(2014.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7.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호(2016.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3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2017.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호(2019.1.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86호(2020.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0호(2020.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3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호(2023.1.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4호(2025.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며 2016.2.12. 조합 설립인가, 강북구고시 제2021-42호(2021.3.12.) 사업시행계획인가, 강북구고시 제2023-134호(2023.12.8.)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 9. 5.

강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면적: 28,497㎡)

다. 건축계획

(1) 규모: 지하4층/지상28층, 6개동 493세대(분양 483세대,

임대 10세대), 연면적 84,572.81㎡

(2)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라. 정비기반시설 등: 도로 6,115.0㎡, 공공청사 1,409.0㎡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2025. 9. 5. ~ 2025. 9. 19.(14일간)

3. 공람장소

가.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02-901-2563)

나. 미아동 1261번지 일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02-987-1261)

4.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5.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에 의한 공람의견서는 제출기한 내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도착분에 한함.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20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5. 9. 5.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연번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제10호	수유역 골목형상점가	권오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7길 일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20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활동 육성과 지원을 위해 새로 조성한 청소년시설을 별표에 추가하고, 그 밖에 조문 및 용어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실질적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명 변경
- 나. 청소년시설의 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 다. 제4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추가 및 기능·위치 정비(안 별표)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